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1.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차폭등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차폭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차폭등이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된 경우 다른 등화의 기준축 방향 발광면으로부터 1) 및 2)의 확인이 가능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차폭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외측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발광면 최하단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내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에 설치된 옆면표시등으로 차폭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발광면 최하단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

측 가능하여야 한다.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차폭등의 발광면은 12.5cm² 이상일 것

라.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마. 작동조건

- 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 2)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차폭등은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

바.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추가적인 요구사항

- 1) 차폭등 내에 설치된 한 개 이상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며, 양쪽 전조등 중 점등된 전조등 쪽의 적외선 투사장치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 2) 전조등 및 차폭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 발생한 측면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적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 3) 곡선로 조명 기능의 적응형전조등에 차폭등이 상호 결합된 조명 유닛인 경우에는 좌·우 회전도 가능할 것

2. 차폭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차폭등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차폭등(전조등내)	4 이상	140 이하	-

주)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0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자동차 차폭등의 광도기준은 ± 20 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